의안 번호	98

2026. 10.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기획조정실 소관】

창원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 번호	98

제출년월일 : 2026. 10. 16.
제 출 자 : 창 원 시 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2027년도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창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출연금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27년	2026년	증 감
창 원 시 정 연 구 원	3,773,424	3,461,791	311,633
한 국 지 방 세 연 구 원	94,298	86,707	7,591

3.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2항 및 제3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참고자료

○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 현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현황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

1.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현황

○ 설립목적 : 시정의 싱크탱크 역할과 혁신을 선도하는 연구기관

○ 설립근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연　　혁 : 법인 설립등기 2015. 4. 7., 개원 2015. 6. 16.

○ 소 재 지 :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848(가음정동)

○ 기　　금 : 685,185,689원

나. 출연금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27년	2026년	증 감
창원시정연구원 출 연 금	3,773,424	3,461,791	311,633

2.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

3. 기대효과

○ 광역시 규모의 복잡·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기능 뒷받침

○ 급변하는 행정수요 예측 및 전략적 대응을 위해 장기적·전문적·체계적인 시정연구 인프라 구축

붙임　관련법령 및 출연기관 현황 각 1부.

붙임 1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재산운영 및 관리)

①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 및 보조금, 기금의 이자수입,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원 재산의 구분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기금을 포함하여 연구원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원장은 연구원 재산의 운영 및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붙임 2 출연기관 현황

▢ 설립목적

- ○ 시정의 싱크탱크 역할과 혁신을 선도하는 최고의 연구기관 육성
- ○ 지역 특화 산업 프로젝트 및 역점시책에 대한 맞춤형 연구 수행
- ○ 행정수요 예측 및 긴급한 연구 요구에 대응

▢ 설립근거

-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2014. 12. 24. 제정)

▢ 연 혁

- ○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 2014. 12. 24.
- ○ 창원시정연구원 발기인총회 개최 : 2015. 3. 23.
- ○ 재단법인 설립허가(행정자치부) : 2015. 4. 3.
- ○ 재단법인 설립등기(창원지방법원) : 2015. 4. 7.
- ○ 창원시정연구원 개원식 : 2015. 6. 16.
- ○ 4실 1팀 2센터 도입 : 2021. 1. 5.
- ○ 4실 1팀 3센터 도입 : 2022. 12. 23.
- ○ 제6대 원장(황인식) 취임 : 2024. 11. 19.

▢ 소재지 및 기금

- ○ 소 재 지 :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848(가음정동)
- ○ 기 금 : 685,185,689원

▢ 인력현황

(2026. 09. 30. 기준)

구분	총계	원장	연 구 직				관리직	공무직
			소계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정원	36	1	21	3	18		8	6
현원	30	1	18	2	16		6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현황

○ 설립목적 : 지방세·재정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자치단체 사업 지원 등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연구기관

○ 설립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설 립 일 : 2011. 2. 28.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양재동)

나. 출연금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27년	2026년	증 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 연 금	94,298	86,707	7,591

다. 산출기초 : 전전년도('25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

라. 출연기한 : 당해연도 3. 31.

2.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3. 기대효과

○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붙임 1. 관련 법령 1부.
2. 출연기관 현황 1부.

붙임 1 관련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 · 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 조사 · 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 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 · 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의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전년도의 인건비 예산 및 집행 현황
5.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6.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7. 기본재산 및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8.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세연구원의 설립 ·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 ·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 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0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 · 평가
3. 지방세의 연구 · 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 · 단체에 기부 · 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붙임 2 **출연기관 현황**

설립근거	법률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www.kilf.re.kr
주요연혁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

인원현황 (2026년 8월 기준)

구 분	계	원장	연구관련직				사무직 시설직
			연구위원직	연구원직	조사분석직	전문직 등	
정 원	**78**	1	24	18	8	10	17
현 원	**61**	**1**	**16**	**10**	**8**	**9**	**17**
총인원	**91**	정원외 인원 30명 (파견공무원 12, 위촉직 연구·전문·행정원 등 18)					

임 원 (2026년 8월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비 고
이 사 장	정 ○ 섭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2024.2.2. ~ 2027.2.1.
부이사장	성 ○ 인	경상남도 창녕군수	2026.3.13. ~ 2027.3.12.
이 사	신 ○ 근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당 연 직
이 사	이 ○ 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	당 연 직
이 사	김 ○ 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정책관	2025.8.30. ~ 2026.8.29.
이 사	이 ○ 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국장	2025.8.30. ~ 2026.8.29.
이 사	심 ○ 섭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장	2025.8.30. ~ 2026.8.29.
이 사	신 ○ 우	경상남도 행정국장	2025.8.30. ~ 2026.8.29.
이 사	김 ○ 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2026.3.13. ~ 2027.3.12.
이 사	김 ○ 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2026.3.13. ~ 2027.3.12.
이 사	조 ○ 일	경상남도 진주시장	2026.3.13. ~ 2027.3.12.
이 사	이 ○ 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2025.8.30. ~ 2027.8.29.
감 사	김 ○ 선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 연 직
감 사	김 ○ 흔	대구광역시 남구 부구청장	2026.3.5. ~ 2028.3.4.

주요기능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 백만원)	139,826 ('11~'25 까지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금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4	2025	2026
예산액	17,813	17,467	16,757
지자체 지원액	13,079	12,415	10,470

재무현황 (백만원) '25.12.31기준

자산	28,531
부채	1,583
자본	26,948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5.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7,600	16,554	1,379

Ⅰ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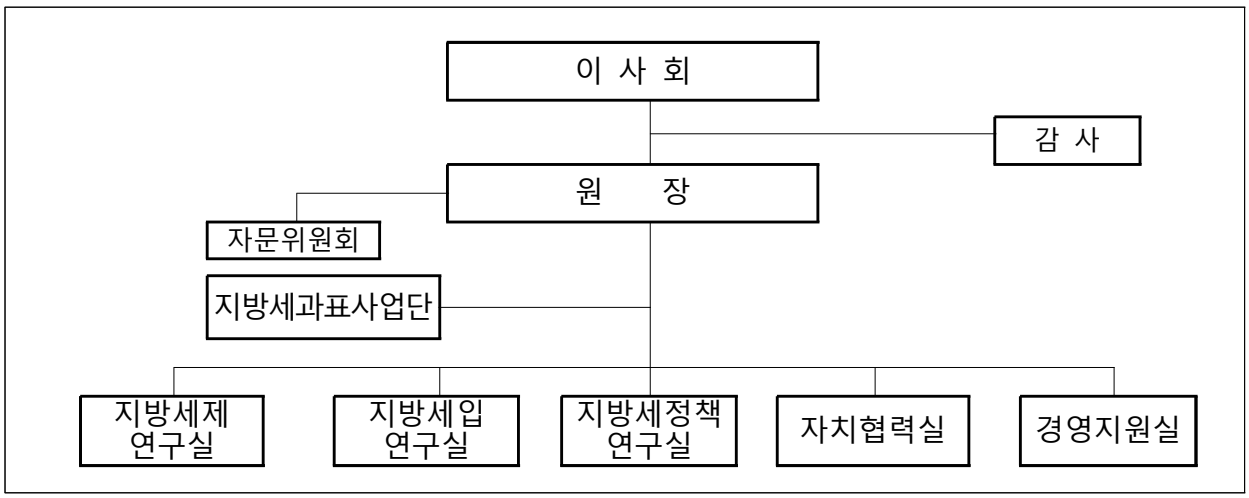
○ **(설립목적)** 지방세·재정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43개 지방정부가 공동 출연

* 설립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인 원) 정원 78명 / 현원 61명** * 육아휴직 9명 포함

구 분	계	원장	연구관련직				사무직 시설직
			연구위원직	연구원직	조사분석직	전문직 등	
정 원	**78**	1	24	18	8	10	17
현 원	**61**	**1**	**16**	**10**	**8**	**9**	**17**
총인원	**91**	정원외 인원 30명 (파견공무원 12, 위촉직 연구·전문·행정원 등 18)					

○ **(조 직) 5실 1사업단**



○ **(예 산) 172.5억원** ※ 2026년 본예산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출연금*	**수탁 등**	**사업비**	**인건비**	**경상경비**	**시설비 등**
104.7 (61%)	67.8 (39%)	92.4 (54%)	60.8 (35%)	16.0 (9%)	2.3 (1%)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

- ('20 이전) 1만분의 1.5 → ('21) 1만분의 1.3 → ('22) 1만분의 1.2→ ('26) 1만분의 1.0

Ⅱ 연구과제 수행 현황 및 주요 연구 성과

1 연도별 연구과제 수행 현황(16개년 간, 총 1,541건 수행)

(단위 : 건)

구 분	계	'11~'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6
계	1,541	256	104	100	113	97	117	133	103	120	126	148	124
기본과제	121	39	12	10	6	9	4	4	5	5	9	9	9
정책과제	714	124	41	47	56	46	64	37	41	45	44	67	102
기 타	706	93	51	43	51	42	49	92	57	70	73	72	13

※ **(기본과제)** 기초이론 연구, **(기획과제)** 현황분석 연구, **(정책과제)** 정책대안마련 연구
(기타과제) 기획과제, 지자체가 의뢰한 수시 및 제도개선 과제 등 포함

2 2026년 주요 연구과제

○ 균형성장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연구

○ 자치분권 및 지역주도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

○ 세원관리 강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 연구

○ 주택시장 안정성 확대를 위한 부동산세제 개편방안 연구

※ 2026년도 연구과제 수행 현황

(2026.6월 기준 / 단위 : 건)

합 계	기본	기획	정책 (제도개선)	수탁
124	9	10	102	3

3 지방세 · 지방재정 분야 현안대응 강화

○ 현안대응센터 운영 및 KILF FOCUS 발간

※ 지방정부 현안 대응을 위해 매주 1회 웹진 발간 중

4 지방정부 정책 현안대응 언론 홍보 강화

○ **(언론 소통)** 보도자료 15건 배포, 언론보도 77건 달성, 언론 기고,인터뷰, 고향사랑기부대상 제작 지원을 통해 **지방재정 의제**를 **전국 단위 확산**

○ **(학술행사)** 지방의회(서울·경기)·지방정부·유관학(협)회 공동으로 현안대응 및 성과확산 학술행사 4건 개최를 통해 **지방정부**와의 **체계적인 협력기반 구축**

○ **(기관협력)** 국가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위원회 정책TF 참여, 분과별 자문위원회 운영, 유관기관 연구협력 8건 체결 등 **상시 소통채널 운영**

○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대상 및 고향사랑페스타 참여, 관련 연구페이퍼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확대 논의**를 선도

5 시가표준액 조사 사업 주요 성과

구 분	'25년 실적	'26년 목표	전년대비	'26년 주요 성과
시가표준액 조사 산정	233,878건	242,000건	+8,122건	
오피스텔	25,618건	26,000건	+382건	과세단위별 대표성 검증
상업용 부동산	72,815건	80,000건	+7,185건	수익가격 산정 확대
미공시공동주택	4,467건	5,000건	+533건	신축 대단지 가격 검증
기타물건	130,978건	131,000건	+22건	어업권 등 현장조사 확대
과표 연구	10건	11건	+1건	제도개선 연계 과제 수행
과표 관리지표	품질관리 필요성 확인	관리지표 개발 추진	체계화	시가표준액 적정성·균형성 진단기반 마련
데이터 기반 과표 관리	-	LTBIS 고도화	기능 고도화	조사·산정·검증 등 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

※ 행정안전부 출연사업 (근거 :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4)

(단위 : 건)

구 분	2027년목표	2026년	2025년	2024년	2023년
합 계	**243,000**	**262,200**	**261,000**	**263,697**	**228,636**
오 피 스 텔	26,000	26,000	26,000	25,257	24,286
상 업 용 부 동 산	80,000	100,000	100,000	106,838	76,880
미공시 공동주택	5,000	5,200	5,000	4,200	3,674
기 타 물 건	131,000	131,000	130,000	127,402	123,796

ㅇ 중점 추진사항

- 과세표준 품질관리 기준 수립 등을 통한 지방세 세원관리 강화 지원
- 시가표준액 권리구제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세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의견청취 및 직권변경 제도 운영 지원
- 실무 적용상 문제점 등 확인하고 의견 수렴하는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 행안부·지방정부·연구원 공동 현장조사 및 과표컨설팅 추진

Ⅲ 연구 외 추진 사업

1 세무공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방세 교육 운영

ㅇ 전국 유일 지방세교육기관으로서 수요자 중심* 운영 추진

※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기초·심화), 교육생 평가 인기과정 선발 등

ㅇ 각 과정별 교육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한 개선사항 피드백 노력

※ '26. 7월말까지 각 과정 교육만족도 평균 94.1 기록

ㅇ '26. 7월말 기준 지방세교육 총 70회 추진, 5,589명 참석

2 자치단체 상호교류를 위한 공동연찬회 지원

ㅇ 기초-광역, 기초-기초 간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연찬회 지원

ㅇ 연찬회 활용 지방세 우수사례 전파(표준화) 및 적극행정 촉진

ㅇ '26. 7월말까지 14개 자치단체, 연찬회 27회, 예산 7천만원 지원

3 '26년 개정 세법을 반영한 「지방세 표준교재」 발간·배포

ㅇ '26년 지방세 4법 개정사항 반영 실무중심 지방세 표준교재* 제작

※ (7권 구성) 기본법, 징수법,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기타세목, 특례제한법

ㅇ '26년 법 개정 후 3개월 집중 집필기간 운영으로 적시성 확보(3월)

ㅇ 표준교재(7권) 각 260부 제작, 지방정부 세정부서 우편 배포

4 제도개선 체계 확립을 위한 지방세 연구동아리 운영

- ㅇ 지방세 관련 연구동아리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으로 활성화
- ㅇ 실무중심 연구 역량 강화와 조직 내 학습문화 정착 도모
- ㅇ '26. 4월 ~ 8월 총 36개 지방정부*, 44개 연구제안서 접수
- ㅇ '26년 제안 연구과제 중 우수 과제 11팀 시상(10월 중)

5 지방세 우수공무원 외국지방세제도 비교연수 기회 제공

- ㅇ 업무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로 해외 선진 지방세제도 연수기회 제공
- ㅇ 선진 지방세 행정 경험을 통해 국내 접목방안 등을 연구
- ㅇ '26년 상반기 17명(지방정부 15, 연구원 2) 연수 완료

6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DB구축 및 실무자료 제공

- ㅇ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판례·결정례·해석 등 법령정보 구축(총 65,099건)
- ㅇ 공무원마당(질의응답·전문가상담 등) 활성화로 소통창구 마련(총84,334건)

※ 2026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현황(6월말) : 총 149,433건 구축

판례와 해석 구축자료						
합계(건)	헌법재판소 결정례	대법원 판례	법제처 유권해석	조세심판원 결정례	감사원심사 결정례	행안부 유권해석
65,099	215	31,408	1,059	1,059	1,995	4,582

지방세 공무원마당 구축자료			
합계(건)	질의 응답	지방세상담	실무자료 등
84,334	51,796	18,151	14,387

7 지방세 불복사건 관련 고품질의 자문의견서 제공 · 지원

- ㅇ 사건별 쟁점과 특성을 면밀히 분석한 고품격·맞춤형 자문의견 제공
  -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 배치(내부변호사 2인, 외부위원 56인)

    * '26. 7월말까지 지방정부 요청 자문의견서 지원(105건, 620억원)
- ㅇ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불복사건에 대한 공동대응 추진
  - 주요 쟁점*과 대응사례를 공유·확산 및 지방자치단체 대응 지원

    * 도시지역 내 공공시설용지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 여부 등 23건

8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추진

ㅇ 법령정보시스템 노후화(2014년 구축)로 추가개발에 한계, 사용자의 기능개선 요청에 대응하여 AI기반 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축 추진

ㅇ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6년 3월 ~ 12월(10개월) / 사업예산 : 936,100천원
- 주요일정 : 착수보고[4월], 지자체 설문조사[5월], 중간보고[9월], 시범운영[11월]

ㅇ 주요내용

- 지능형 검색체계 도입으로 검색속도 및 연관 검색기능 등 강화

Ⅳ 2027년 중점 연구 방향

1 자주재원 확대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방안 연구

ㅇ 재정분권 로드맵과 연계한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제도 개편, 국세·지방세 세원구조 개선 및 신세원 제도화 등

ㅇ AI 산업 확대 및 기술전환 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비한 지방세제 구축방안 연구,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지방세제 대응방안 연구

2 지역통합·초광역 지방정부 세제·재정 설계 방안 연구

ㅇ 지역통합에 따른 지방세입 구조변화, 지방재정 영향분석 표준 모형 개발

ㅇ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지방세정책과 세정 운영 연구

3 고향사랑기부제 고도화에 관한 연구

ㅇ 세액한도 확대방안, 기업형·재외동포형 고향사랑기부제 추진방안

4 (확대) AI 활용 지방세·재정시스템 고도화 지원을 위한 연구

ㅇ AI기반 세수추계 시스템 구축 기초 연구, 지방세제·재정 분야 연구 성과 통합 DB 구축 및 활용 목적 AI인프라 구축 연구